

노인학대.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

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

-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.
-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-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.
-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.
-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
-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.
-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.



노인학대신고의무자 : 의료인, 노인복지시설 직원, 장애인관련 모든직원, 사회복지 상담원

<노인학대 유형>

신체적학대 - 물리적인 힘,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,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정서적학대 -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
경제적학대 -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.

성적학대 -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,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.

방임 -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, 의무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,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.
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
자기방임 -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.

유기 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.

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

-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.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.
-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.
-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있는지 살핍니다.
-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-1389로 신고합니다.
-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.

노인학대 신고 · 상담전화



1577-1389